

의안번호	2215451
의 퇴 인	서일준의원
회 답 일	2026.5.22.
추 계 번호	25D7078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결과

- 개정안에 따라 참전유공자 사망 시 참전명예수당을 배우자에게 승계하고, 의료지원, 요양지원을 보조하며, 참전유공자의 묘지안장을 지원할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7년부터 2031년까지 배우자에게 참전명예수당의 100% 지급 시 4조 8,511억원(연평균 9,702억원), 참전명예수당의 70% 지급 시 3조 5,377억원(연평균 7,075억원)으로 추계됨

[표 1]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단위: 억원)

		2027	2028	2029	2030	2031	합계	연평균
참전명예수당 배우자 승계	수당 100% 지급	8,201	8,485	8,713	8,887	9,143	43,429	8,686
	수당 70% 지급	5,677	5,909	6,099	6,249	6,360	30,295	6,059
의료지원	보훈병원	77	78	79	80	81	396	79
	위탁병원	429	432	435	439	442	2,178	436
	소계	506	511	515	519	524	2,574	515
요양지원 보조		6	6	5	5	5	27	5
묘지안장 지원		524	512	497	480	469	2,481	496
합계	수당 100% 지급	9,237	9,513	9,730	9,891	10,141	48,511	9,702
	수당 70% 지급	6,714	6,937	7,116	7,253	7,358	35,377	7,075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I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6조(참전명예수당)	국가보훈처장은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와 그 배우자(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에 한정함)에게는 참전의 명예를 기리기 위하여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함(제1항)	의무규정
2	안 제7조(의료지원)	참전유공자 또는 그 배우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의료기관(보훈병원 포함)과 그 외의 위탁의료기관에서 본인이 부담하게 될 비용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하며, 그 감면된 비용은 국가가 부담함	의무규정
3	안 제8조(양로지원)	65세 이상인 참전유공자 또는 그 배우자로서 부양의무자가 없는 사람(부양의무자가 있으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국가 또는	재량규정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양로시설에서 지원할 수 있음	
4	안 제8조의2(요양지원에 대한 보조)	국가보훈처장은 참전유공자 또는 그 배우자 중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재가급여나 시설급여를 받는 사람에게는 기준 중위소득 등 생활 수준을 고려하여 본인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음	재량규정
5	안 제8조의7(심리적 재활 등)	국가보훈처장은 참전유공자 또는 그 배우자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하여 심리상담 등 심리재활서비스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그 사업을 수행하여야 함(제1항)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내용·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제2항)	의무규정
6	안 제9조(묘지에의 안장)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참전명예수당의 1년분에 해당하는 금액(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달에 받은 참전명예수당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을 장제보조비(葬祭補助費)로 지급함(제4항)	의무규정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 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1	안 제6조(참전명예수당)	0	-
2	안 제7조(의료지원)	0	-
3	안 제8조(양로지원)	-	양로지원 시설로 수원 보훈원을 운영하고 있으며, 입소 인원과 상관없이 매년 보훈원에 양로지원 사업비를 정액으로 지원하고 있어 추가재정소요는 없음 참고로, 2026년 보훈원 양로지원 사업에 35억 4,3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음
4	안 제8조의2(요양지원에 대한 보조)	0	-
5	안 제8조의7(심리적 재활 등)	-	마음치유센터에 있는 상담사 15명으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임. 다만, 대상자 확대 시 상담사 추가 채용 가능성은 있으나 상담건수의 증가 규모와 관련하여 현 시점에서 합리적으로 판단하기 곤란함
6	안 제9조(묘지에의 안장)	0	-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개정안에 따라 참전유공자 사망 시 배우자에게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고 의료지원, 요양지원 보조, 심리적 재활, 묘지안장 등을 지원할 경우 추가재정소요 발생
 - 국가보훈부는 심리적 재활의 경우, 마음치유센터에 있는 상담사 15명으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하고 있음. 다만, 대상자 확대 시 상담사 추가 채용 가능성은 있으나 상담건수의 증가 규모와 관련하여 현 시점에서 합리적으로 판단하기 곤란하여, 추계대상에서 제외함
-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 대한 의료지원, 요양지원 보조, 묘지안장 등은 참전명예수당과 동일하게 생존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는 지원하지 않고,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에만 지원하는 것으로 가정함
 -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수는 무공수훈자 유배우자율 72.1%를 적용하여 추정함
 - 의료지원 시 진료단가 및 수진횟수는 최근 5년간 실적자료를 이용하여 산정함
- 개정안은 법 공포 후 6개월이 경과된 날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추계기간은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으로 함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 내역

가. 참전명예수당 배우자 승계

(1) 대상자 수

- 참전명예수당 수급대상자는 2025년 연말 기준 10만 8,909명이며, 최근 5년간 연평균 9.4% 감소

[표 2] 참전명예수당 수급자 현황

(단위: 명, %)

구분	2021	2022	2023	2024	2025	연평균증감률
지급인원(명)	161,577	146,932	132,479	120,190	108,909	-9.4

자료: 국가보훈부

- 참전명예수당 수급자의 최근 5년간 연평균 증감률 -9.4%를 적용하여 추계기간의 참전명예수당 수급자 수를 추정하면 아래 표와 같음

[표 3] 참전명예수당 수급자 수 추정: 2027~2031년

(단위: 명, %)

구분	2027	2028	2029	2030	2031	연평균증감률
지급인원(명)	89,397	80,994	73,381	66,483	60,234	-9.4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승계 배우자 인원은 참전명예수당 수급자 수가 감소한 만큼 참전유공자 사망자 수로 가정하고, 사망자 수에 유배우자율을 적용하여 당해연도 신규 수권 배우자 수를 추정
 - 전년도 수권 배우자 수 누계에 배우자사망률을 적용하고 신규 수권 배우자 수를 더하여 당해연도 수권 배우자 수 누계를 추정
 - 참전유공자 유배우자율은 무공수훈자 최근 3년 평균 유배우자율 75.0%, 배우자의 사망률은 최근 3년 무공수훈자 배우자 사망률 7.2%를 적용함

[표 4] 참전명예수당 수급 배우자수 추정: 2027~2031년

(단위: 명)

배우자 승계	2027	2028	2029	2030	2031
전체 참전명예수당 수급자	89,397	80,994	73,381	66,483	60,234
참전명예수당 수급자 사망자 수(A)	8,403	7,613	6,898	6,249	5,662
신규 수권 배우자 발생자 수 ($B=A \times \text{유배우자율}$)	6,059	5,489	4,973	4,506	4,082
누적 수권 배우자 수 ($C_t = C_{t-1} \times \text{사망율} + B$)	131,422	126,266	121,011	115,715	110,424

주: 1. 참전명예수당 수급자 사망자 수는 전년도 참전명예수당 수급자 수에서 해당연도 참전명예수당 수급자 수를 차감하여 산출함

2. 누적 수권 배우자 수는 2023년 국가보훈부가 추정한 기상망참전유공자 배우자 수 149,548명을 기준으로 무공수훈자 최근 3년 평균 유배우자율 72.1% 및 최근 3년 무공수훈자 배우자 사망률 8.1%를 적용하여 추정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2) 지급단가

□ 최근 참전명예수당 지급단가 추이는 아래 표와 같음

[표 5] 참전명예수당 월 지급액 현황

(단위: 천원, %)

구분	2021	2022	2023	2024	2025	연평균증가율
월 지급액	340	350	390	420	450	7.3

자료: 국가보훈부

□ 최근 참전명예수당 지급단가 연평균증가율 7.3%를 적용하여, 추계기간 동안의 참전명예수당 지급단가를 추정하고, 승계배우자에게 지급되는 참전명예수당을 기존 참전명예수당의 100%를 지급할 경우와 70%를 지급할 경우 등 두 가지로 구분하면 아래 표와 같음

[표 6] 참전명예수당 월 지급액 추정: 2027~2031년

(단위: 천원, %)

연도	2027	2028	2029	2030	2031	연평균증감률
참전명예수당 의 100%	520	560	600	640	690	7.3
참전명예수당 의 70%	360	390	420	450	480	7.3

주: 천원 단위에서 반올림하여 실제 계산결과와 오차가 있을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3) 추계결과

- 개정안에 따라 참전유공자 사망 시 배우자에게 참전명예수당을 승계할 경우, 2027~2031년 기간 추가재정소요는 승계참전명예수당을 기존 명예수당의 100%를 지급할 경우, 4조 3,429억원, 기존 명예수당의 70%를 지급할 경우 3조 295억원으로 추계됨

[표 7]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7~2031년

구분		2027	2028	2029	2030	2031	합계
참전명예수당 수급자 배우자 수(명)		131,422	126,266	121,011	115,715	110,424	—
지급단가(천원/월)	참전명예수당의 100%	520	560	600	640	690	—
	참전명예수당의 70%	360	390	420	450	480	—
추가재정소요(억원)	참전명예수당의 100%	8,201	8,485	8,713	8,887	9,143	43,429
	참전명예수당의 70%	5,677	5,909	6,099	6,249	6,360	30,295

주: 소수점 이하 반올림으로 계산결과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나. 의료지원

(1) 추가지원대상

- 개정안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의료기관(보훈병원 포함)과 위탁병원에서의 진료비용 감면부분에 대해 국가가 부담하는 대상자의 범위를 기존 “참전유공자”에서 “참전유공자 또는 배우자”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추가재정소요 발생
 - 추계에서는 참전명예수당과 동일하게 생존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는 의료 지원을 하지 않고, 참전유공자 사망 시 배우자에게 의료지원을 하는 것으로 가정함
- 현재 국가보훈부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국가유공자 유가족에 대해 보훈병원¹⁾은 본인부담 진료비에 대상별 감면비율(30~60%)을 적용하여 금액을 지원하고 있으며, 위탁병원에 대해서는 보상금을 수령하는 선순위 유족에 대해서만 본인부담진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2조는 동법 제42조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의료기관으로 보훈병원만을 지정하였음.

료비에 대상별 감면비율 60%를 적용하여 지원하고 있음

[표 8] 국가유공자 유가족에 대한 진료지원 제도 현황

의료기관	진료대상	지원범위
보훈병원	▶ 국가유공자 유가족	국가유공자 유가족은 60% ▶ 본인 부담 진료비에 대상별 감면비율(30~60%)을 적용한 금액 지원 (비급여, 원외 처방 약제비 포함)
위탁병원	▶ 유족 - 보상금을 수령하는 선순위 유족	▶ 본인 부담 진료비에 대상별 감면비율(60%)을 적용한 금액 지원(비급여, 원외 처방 약제비 미지원)

자료: 국가보훈부

□ 개정안에 따라, 현행법과 개정안의 참전유공자 배우자의 의료지원 여부를 비교하면 아래 표와 같음

- 개정안에 따라 참전유공자 배우자에게 위탁병원에서의 진료지원을 할 경우, 보훈병원의 경우 보상금 수급자를 제외한 기존 참전명예수당, 고엽제수당 수급자의 배우자가 신규지원대상이며, 위탁병원의 경우, 참전명예수당, 고엽제수당, 무공영예수당 수급자의 배우자가 신규지원 대상임

[표 9] 현행법과 개정안의 참전유공자 유가족의 의료지원 비교

구분	보훈병원		위탁병원	
	현행	개정안	현행	개정안
기존 참전명예수당	미지원	지원	미지원	지원
보상금	지원	지원	지원	지원
고엽제수당	미지원	지원	미지원	지원
무공영예수당	지원	지원	미지원	지원

자료: 국가보훈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참전유공자 및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의 최근 5년간 사망자 수 증감율을 적용하여 추계기간의 사망자 수를 추정한 후, 그에 따른 배우자수를 추정

- 생존 유공자의 배우자는 참전명예수당 수급자 수에 무공수훈자 유배우자를 72.1%를 적용하여 추정
- 매년 유공자 사망자 수에 무공수훈자 유배우자를 72.1%를 적용하여 해당 년도의 신규 수권 배우자 수를 추정한 후, 기 사망유공자의 배우자 수에

무공수훈자 배우자의 사망률 8.1%를 적용 후 신규 수권배우자 수를 합하여 누적 수권 배우자 수를 추정

[표 10] 의료지원 대상자 수 추정: 2027~2031년

(단위: 명)

구분		2027	2028	2029	2030	2031
참전 명예수당	전체 참전명예수당 수급자	89,397	80,994	73,381	66,483	60,234
	참전명예수당 수급자 사망자 수(A)	8,403	7,613	6,898	6,249	5,662
	신규 수권 배우자 발생자 수($B=A \times \text{유배우자율}$)	6,059	5,489	4,973	4,506	4,082
	누적 수권 배우자 수($C_t = C_{t-1} \times \text{사망율} + B$)	131,422	126,266	121,011	115,715	110,424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사망자 수(d)	3,558	3,852	4,170	4,514	4,887
	신규 수권 배우자 수($e = d \times \text{유배우자율}$)	2,565	2,777	3,007	3,255	3,524
	누적 수권 배우자 수($F_t = F_{t-1} \times (1 - \text{사망율}) + e$)	22,731	23,667	24,757	26,007	27,424
합계(C+E)		154,153	149,933	145,768	141,722	137,848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무공수훈자의 배우자 수는 국가보훈부가 조사한 2022~2024년간 전체 무공수훈자 배우자 수를 기준으로 연평균 증감률을 적용하여 추정

[표 11] 무공수훈자 배우자 수

(단위: 명, %)

	2022	2023	2024	연평균 증감률
무공수훈자 배우자 수	25,696	24,727	23,592	-4.2

자료: 국가보훈부

[표 12] 무공수훈자 배우자 수 추정: 2027~2031년

(단위: 명)

	2027	2028	2029	2030	2031
무공수훈자 배우자 수	20,755	19,887	19,055	18,258	17,495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2) 보훈병원 진료지원

- (추가 지원대상) 개정안에 따라 보훈병원 진료지원을 추가로 받게 되는 대상은 참전명예수당 수급자의 배우자와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배우자임

[표 13] 보훈병원 진료지원 추가대상자 수 추정: 2027~2031년

(단위: 명)

	2027	2028	2029	2030	2031
참전명예수당 수급자 배우자	131,422	126,266	121,011	115,715	110,424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배우자	22,731	23,667	24,757	26,007	27,424
합계	154,153	149,933	145,768	141,722	137,848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진료단가 및 수진횟수) 진료단가는 2024년 보훈병원 60% 감면 대상자의 진료단가에 최근 5년간 연평균증가율을 적용하고, 수진횟수는 최근 5년간 평균을 적용하여 추정

[표 14] 최근 5년간 보훈병원 진료실적(60%(유족) 감면진료)

구분	2020	2021	2022	2023	2024	평균 (연평균증가율)
①지원액(백만원)	45,807	48,323	48,629	53,878	60,623	-
②진료연인원(명)	727,393	750,428	728,030	801,171	818,852	-
③의료지원대상자(명)	1,309,021	1,305,069	1,304,985	1,308,232	1,311,691	-
②/③수진횟수(회)	0.6	0.6	0.6	0.6	0.6	0.6
①/②진료단가(원)	62,974	64,394	66,795	67,249	74,035	4.1

자료: 국가보훈부

[표 15] 보훈병원 수진횟수 및 진료단가 추정

(단위: 회, 원)

구분	2027	2028	2029	2030	2031
수진횟수	0.6	0.6	0.6	0.6	0.6
진료단가	83,588	87,039	90,632	94,374	98,270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추계결과) 개정안에 따라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보훈병원 진료를 지원할 경우, 예상되는 추가재정소요는 2027년부터 2031년까지 향후 5년간 396억 4,100만원으로 추계됨

[표 16] 보훈병원 진료지원 확대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구분	2027	2028	2029	2030	2031	합계
①대상인원(명)	154,153	149,933	145,768	141,722	137,848	-
②수진횟수(회)	0.6	0.6	0.6	0.6	0.6	-
③진료단가(원)	83,588	87,039	90,632	94,374	98,270	-
진료비(백만원, ①×②×③)	7,731	7,830	7,927	8,025	8,128	39,641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3) 위탁병원

- (추가 지원대상) 개정안에 따라 위탁병원 진료지원을 추가로 받게 되는 대상은 참전명예수당 수급자의 배우자와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배우자 및 무공수훈자의 배우자임

[표 17] 위탁병원 진료지원 추가대상자 수 추정: 2027~2031년

(단위: 명)

	2027	2028	2029	2030	2031
참전명예수당 수급자 배우자	131,422	126,266	121,011	115,715	110,424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배우자	22,731	23,667	24,757	26,007	27,424
무공수훈자 배우자 수	20,755	19,887	19,055	18,258	17,495
합계	174,908	169,820	164,823	159,980	155,343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진료단가 및 수진횟수) 진료단가는 2024년 위탁병원 60% 감면대상자 진료단가에 최근 5년간 연평균증가율을 적용하고, 수진횟수는 최근 5년간 평균을 적용하여 추정

[표 18] 최근 5년간 위탁병원 진료실적(60%(유족) 감면진료)

구분	2020	2021	2022	2023	2024	평균 (연평균증가율)
①지원액(백만원)	9,822	8,498	10,730	11,656	12,683	
②진료연인원(명)	452,198	419,460	440,479	512,214	503,248	
③의료지원대상자(명)	44,674	50,190	52,836	58,544	63,054	
②/③수진횟수(회)	10.1	8.4	8.3	8.7	8.0	8.7
①/②진료단가(원)	21,721	20,261	24,360	22,756	25,202	(3.8)

자료: 국가보훈부

[표 19] 위탁병원 수진횟수 및 진료단가 추정: 2027~2031년

(단위: 회, 원)

구분	2027	2028	2029	2030	2031
수진횟수	8.7	8.7	8.7	8.7	8.7
진료단가	28,186	29,257	30,369	31,523	32,721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추계결과) 개정안에 따라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위탁병원에서의 진료를 지원할 경우, 예상되는 추가재정소요는 2027년부터 2031년까지 향후 5년간 2,137억 2,500만원으로 추계됨

[표 20] 위탁병원 진료지원 확대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7~2031년

구분	2027	2028	2029	2030	2031	합계
㉠대상인원(명)	174,908	169,820	164,823	159,980	155,343	—
㉡수진횟수(회)	8.7	8.7	8.7	8.7	8.7	—
㉢진료단가(원)	28,186	29,257	30,369	31,523	32,721	—
진료비(백만원, ㉠×㉡×㉢)	42,891	43,225	43,548	43,875	44,222	217,761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4) 추계결과

- 개정안에 따라 참전유공자 사망 시 배우자에게 보훈병원과 위탁병원에서 진료지원을 할 경우, 2027년부터 2031년까지 향후 5년간 추가재정소요는 2,574억 200만원임

[표 21]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추계 결과: 2027~2031년

(단위: 백만원)

	2027	2028	2029	2030	2031	합계
보훈병원	7,731	7,830	7,927	8,025	8,128	39,641
위탁병원	42,891	43,225	43,548	43,875	44,222	217,761
합계	50,622	51,055	51,475	51,900	52,350	257,402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다. 요양지원 보조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요양지원 보조를 적용할 경우, 추가재정소요 발생
- 2024년 결산 기준 요양지원 보조 월 지급단가는 68,941원이며 최근 5년간 연평균 1.6%의 증가율을 보임

[표 22] 요양지원 보조 현황

구분	2020	2021	2022	2023	2024	연평균 증가율
소요예산(백만원)	2,060	2,488	3,095	3,529	3,928	-
지급인원(명)	2,657	3,324	3,987	4,333	4,748	-
월 지급단가(원)	64,609	62,375	64,689	67,871	68,941	1.6

자료: 국가보훈부

- 지원대상자 수는 사망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수에 참전유공자 중 요양지원 보조를 받은 인원 비율인 0.5%를 적용하여 산정함
- 지급단가는 2024년 월 지급단가에 최근 5년간 연평균증가율 1.6%를 적용하여 산정함
- 요양지원 보조 지급인원에 월 지급단가를 곱하여 산정한 추가재정소요는 2027년부터 2031년까지 27억 600만원으로 추계됨

[표 23]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요양지원 보조 시 추가재정소요: 2027~2031년

구분	2027	2028	2029	2030	2031	합계
사망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명)	131,422	126,266	121,011	115,715	110,424	-
지급인원(명)	657	631	605	579	552	-
월 지급단가(원)	72,304	73,461	74,636	75,830	77,043	-
추가재정소요(백만원)	570	557	542	526	510	2,706

주: 지급인원은 사망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수에 참전유공자 중 요양지원 비율 0.1%를 적용하여 산정함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라. 묘지 안장 지원

- 개정안에 따라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참전명예수당의 1년분에 해당하는 금액(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달에 받은 참전명예수당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을 장제보조비(葬祭補助費)로 지급할 경우의 추가재정소요를 추계
- [표4]에서 추정된 참전명예수당 수급자 사망인원에 [표6]에서 추정된 참전명예수당 월지급액 1년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곱하여 산정한 추가재정소요는 2027년부터 2031년까지 2,481억 3,300만원으로 추계됨

[표 24]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요양지원 보조 시 추가재정소요: 2027~2031년

구분	2027	2028	2029	2030	2031	합계
참전유공자 사망인원(명)	8,403	7,613	6,898	6,249	5,662	—
지원단가(천원)	6,240	6,720	7,200	7,680	8,280	—
추가재정소요(백만원)	52,435	51,159	49,666	47,992	46,881	248,133

주: 지급인원은 사망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수에 참전유공자 중 요양지원 비율 0.5%를 적용하여 산정함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마. 추계결과

- 개정안에 따라 참전유공자 사망 시 참전명예수당을 배우자에게 승계하고, 의료지원, 요양지원을 보조하며, 참전유공자의 묘지안장을 지원할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7년부터 2031년까지 배우자에게 참전명예수당의 100% 지급 시 4조 8,511억원, 참전명예수당의 70% 지급 시 3조 5,377억원으로 추계됨

[표 25]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단위: 억원)

		2027	2028	2029	2030	2031	합계
참전명예수당 배우자 승계	수당 100% 지급	8,201	8,485	8,713	8,887	9,143	43,429
	수당 70% 지급	5,677	5,909	6,099	6,249	6,360	30,295
의료지원	보훈병원	77	78	79	80	81	396
	위탁병원	429	432	435	439	442	2,178
	소계	506	511	515	519	524	2,574
요양지원 보조		6	6	5	5	5	27
묘지안장 지원		524	512	497	480	469	2,481
합계	수당 100% 지급	9,237	9,513	9,730	9,891	10,141	48,511
	수당 70% 지급	6,714	6,937	7,116	7,253	7,358	35,377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IV. 부대의견

- 본 추계는 참전유공자 사망 시, 참전명예수당 및 의료지원, 요양지원보조 등 지원을 받을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수 산정 시 2024년 무공수훈자 유 배우자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결과로, 실제 추가재정소요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의료지원 및 요양지원 보조 신규지원대상을 생존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는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하였음

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행정비용추계과	전수연	김안나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전수연	02-6788-4667	syjeon@assembly.go.kr